

보도시점 2026. 4. 28.(화) 12:00 / 배포 2026. 4. 28.(화) 07:30  
< 4. 29.(수) 조간 >

## 한화 - 구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 기업결합 승인 당시 예정한 바에 따라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및 한화오션(주)(舊 대우조선해양(주))(이하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23. 5. 1. 전원회의 의결(의결 제2023-076호, 이하 '원심결')을 통해 위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①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②한화오션(주)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③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하면서,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 즉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심결 시정조치 대상인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 시장\*의 시장집중도 및 해당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지배력 변화,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을 분석하고, 다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6. 4. 15.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 그리고 피심인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큰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 < 시장 경쟁상황의 변화 >

공정위가 최근 3년('23~'25) 동안의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주)는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이고, 10개 함정 부품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또는 한화시스템(주)가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피심인들이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함정 건조업체(하방 시장)가 함정 부품(상방 시장)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조건 등이 악화되는 효과 등을 의미함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

한편,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의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다도, 원심결 당시 고려하였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원심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이행기간 연장 내용 >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종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본 결정은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이다.

\* 행태적 조치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의미함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붙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검토 상세내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책임자	과 장	김성한 (044-200-5075)
		담당자	사무관	김범규 (044-200-5077)
	경제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4-200-4606)
		담당자	사무관	원세범 (044-200-4608)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검토 상세내용

1

사건의 개요

1. 기업결합 개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5개 사업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22.12.19.)하였다.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주)한화컨버전스, Hanwha Impact Partners Inc. (미국),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등 5개 사업자
- 다만, 원심결 시정조치는 방위산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오션(주)(舊대우조선해양(주))(이하 '피심인들')에만 부과되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율 변화



※ 출처 : 연합인포맥스(2022.12.16.)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항공·우주·방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한화시스템(주)는 함정전투체계, 열영상 감시장비 등 각종 군사장비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주)는 상선, 특수선(함정 등), 해양플랜트 건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는 기업결합 당시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독점이거나 유력한 사업자이며, 한화오션(주)는 국내 수상함 시장에서 2위 사업자, 잠수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에 해당하였다.

## 2. 원심결 주요 내용

- (경쟁제한성) 공정위는 '23. 5. 1. 전원회의 의결(의결 제2023-076호, 이하 '원심결')에서 국내 10개 함정 부품 도급\*시장(상방) - 국내 함정 시장(하방) 간 수직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부품 구매방식으로서 관급은 방위사업청이 함정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은 함정과 부품을 일괄 발주하고,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원심결에서 한화 계열 부품업체들이 한화오션(주)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시정조치) 공정위는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①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②한화오션(주)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③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부과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심인들은 위 3가지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상황의 변동 등, 즉 시장 경쟁 환경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3. 이번 연장 건 심사 배경

- 원심결에서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위는 3년의 기간 도래 시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착수하였다.

## 1. 시장 경쟁상황

### <합정 시장>

- (수상함·잠수함) 최근 3년('23~'25) 평균 기준 한화오션(주)가 수상함(67.3%) 및 잠수함(64.8%)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다.

\* 한화오션 수상함 시장점유율 : (결합 前) 25.4% (2위) → (결합 後) 67.3% (1위)  
 한화오션 잠수함 시장점유율 : (결합 前) 97.8% (1위) → (결합 後) 64.8% (1위)

### <합정 부품 시장>

- (전자광학장비 등 5개 부품) 전자광학장비, 합정사격통제장비, 유도탄능동유인체, 합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시장의 경우 결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화시스템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 (합정항법장비 등 3개 부품) 합정항법장비, 합정전투체계, 합정용 엔진 시장의 경우 한화시스템(주)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점유율이 일부 하락한 경우가 있으나, 최근 3년 평균 기준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큰 1위 사업자이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다.

\* 한화시스템 합정항법장비 시장점유율 : (결합 前) 100% (1위) → (결합 後) 90% (1위)  
 한화시스템 합정전투체계 시장점유율 : (결합 前) 96% (1위) → (결합 後) 79% (1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합정용 엔진 시장점유율 : (결합 前) 84% (1위) → (결합 後) 73% (1위)

- (합정피아식별장비) 신규 부품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그 업체의 수주 실적이 증가하여 한화시스템(주)의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최근 3년 평균 기준 2위 사업자이므로 한화시스템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낮다.

\* 한화시스템 합정피아식별장비 시장점유율 : (결합 前) 100% (1위) → (결합 後) 46% (2위)

- (합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한화시스템(주)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1위이지만, 경쟁업체의 수주 실적 증가로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매우 근소한 1위 사업자이므로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낮다.

\* 한화시스템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점유율 : (결합 前) 76% (1위) → (결합 後) 48% (1위)

## 2. 관련 법제도 변화

- 원심결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기준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등 합정 부품업체와 합정 건조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정보 제공 및 견적가격 제시 등의 행위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결 당시 제안서 평가 기준이 최근 3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나아가, 2026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단계에서의 제안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기본설계 및 후속함 건조 단계뿐만 아니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단계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경쟁 합정 건조업체 입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 3. 시정조치 연장 필요성

###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

- 최근 3년간 수상함, 잠수함 및 8개 합정 부품시장에서 피심인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고, 합정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상 합정 건조업체와 부품업체 사이의 협력이 여전히 필수적이므로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가격 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화시스템(주)는 합정피아식별장비 시장에서는 점유율 하락으로 2위 사업자가 되었고, 합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근소할 정도로 경쟁압력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 <연장기간에 대한 검토>

- 공정위는 양산함의 경우 최소 5년 정도의 획득 기간이 소요되므로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결합 시점부터 5년 이상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3

## 이번 시정조치 주요 내용

- 원심결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029.5.2.까지 연장하고, 기업결합 이후 시장 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시정조치를 재차 연장할 수 있다.
- 원심결 시정조치 대상 시장 중에서 함정피아식별장비 및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은 시정조치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

##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이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참고> 1. 피심인 일반현황  
2. 함정 부품 및 함정 개요  
3. EU 시정조치 연장 관련 심결례

# 참고1

## 피심인 일반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업내용	항공기 엔진·부품, 특수방산장비 등 제조		전투지휘체계시스템, 탐지추적장치 등 제조		선박, 해양플랜트 등 제조	
자산총액 (기업집단)	17,364,759 (268,061,000)		5,219,490 (268,061,000)		17,407,210 (268,061,000)	
매출액 (기업집단)	7,935,101 (80,457,000)		2,793,633 (80,457,000)		10,764,757 (80,457,000)	
주주구성 (2025.12.31. 기준)	주주	비율	주주	비율	주주	비율
	한화 Hanwha Impact Partners	32.18 2.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7.7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44
	한화에너지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	0.32 0.74	한화에너지	12.80	한화시스템	11.57
	자기주식	0.22	자기주식	1.02	자기주식	0.01
	기 타	64.27	기타	38.45	기타	57.98
	합 계	100.00	합 계	100.00	합 계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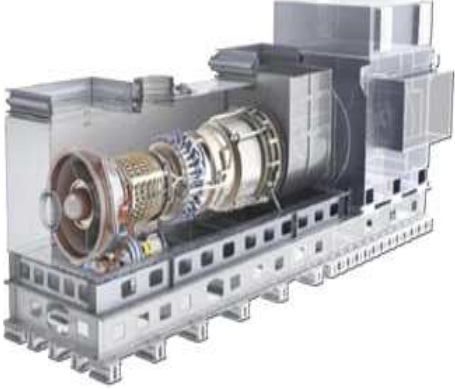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 참고2

## 함정 부품 및 함정 개요

분류	세부분류	이미지	설명
함정 부품	전자 광학 장비		<p>센서 및 레이저를 활용한 탐지추적센서로, 가시광 및 적외선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표적의 3차원 위치 정보와 영상정보를 획득하여 함정전투체계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p>
	함정 항법 장치		<p>함정의 자세, 운동 정보를 탐지하여 함정제어장치 및 함내 전반에 제공하는 장비</p>
	함정 전투 체계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CS Functional Chain (Sensor to Shooter). It shows a flow from a 'Sensor' (represented by various electronic components) through 'Sensor Control' to a 'Combat System' (represented by a control console), and then through 'Weapon Control' to a 'Weapon' (represented by various armaments). The entire chain is enclosed in a dashed-line box.</p>	<p>군함의 두뇌에 해당하여, 동시에 다가오는 다양한 위협체를 함정에 탑재된 센서로 탐지·분석하고, 함포 등의 무장체계에 명령하여 위협체를 제거하는 함정 무기체계</p>



<p>잠수함용 리튬 전지체계</p>		<p>잠수함에 탑재되는 전원공급 장치로 기존 납축전지 대비 작전운용성 증대</p>
<p>함정용 엔진</p>		<p>함정에 탑재되는 엔진(추진체계)</p>
<p>함정 통합기관 제어 시스템</p>		<p>함정을 구성하는 추진 계통, 전력 계통, 손상통제 계통, 보기 계통 등 별도로 각각 제어하던 시스템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상호 통합하여 제어·감시할 수 있는 장치</p>

함정	수상함		<p>해상에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으로 수상 작전 및 상륙 작전을 수행</p>
	잠수함		<p>수중을 잠항할 수 있는 군함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전투 뿐만 아니라 은밀한 정찰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 운용</p>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EU Daimler-BMW Car-Sharing JV 설립 건(2018.11.7. Case M.8744) >**

- (개요) BMW와 Daimler는 2018년 카셰어링, 차량호출, 주차, 모빌리티플랫폼 등 5개 모빌리티서비스를 통합하는 6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기업결합 추진
  - EC는 카셰어링 및 모빌리티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시정조치) ①카셰어링앱의 API를 제3자 플랫폼에 개방, ②자사 통합 플랫폼에 경쟁 카셰어링 사업자의 접근 허용, ③결합일로부터 3년간 의미 있는 시장진입(통합법인 전년도 차량 공급규모의 60% 이상 수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보
  - 적용지역은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 뒤셀도르프, 빈 등 6개 도시이고, 시정조치 기간은 2019.1.31.~2022.1.31.에 해당하였음
- (조치 연장) EC는 쾰른, 뒤셀도르프, 빈 3개 도시에서 경쟁사의 진입이 충분하지 않고(60% 미만), 제3자가 API 접근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EC 직권으로 2년 연장

Daimler-BMW 심결례 발취

According to Clause 39 of the Commitments, the Commiss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prior to the expiry of the Commitments, extend the time period foreseen in clauses 3 and 11 of the Commitments for two years and for individual cities only in appropriate cases.

Clause 39 of the Commitments specifies that an appropriate case for extension only exists, if within three years from Closing of the Transaction no meaningful market entry has taken place in the respective cities. Pursuant to the Commitments, meaningful market entry has occurred when one or more car sharing provider(s) enter(s) one of the relevant cities covered by the Commitments and reach(es) more than 60% of the average fleet size of the merged entity's fleet of the preceding year.

Based on the abov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favourable opinion of the Monitoring Trustee, the Commission has decided to extend, on its own initiative, the Commitments in each of the cities of Cologne, Düsseldorf and Vienna pursuant to clause 39 of the Commitments for a period of 2 years from 31 January 2022 until 31 January 2024.

## < Google-Fitbit 인수 건(2020.12.17. Case M.9660) >

- (개요) Google의 Fitbit 인수와 관련하여 Fitbit의 건강데이터의 Google 광고 활용 가능성, 경쟁 wearable 사업자 배제 가능성, Android 플랫폼 생태계에서 자사 우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
- (시정조치) ① Fitbit 건강데이터 광고 활용 금지, ② Wearable 제조사들이 Fitbit Web API(데이터) 접근 보장, ③ 경쟁 Wearable의 Android 스마트폰과 호환성 차별 금지, ④ 위 시정조치를 10년간 부과하면서, Fitbit 건강데이터 광고 활용 금지 의무의 경우 마지막 해에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 등을 평가하여 10년 연장 가능

### Google-Fitbit 심결례 발췌

#### 10.5.1.1.The Ads Commitment

(944) With respect to the Initial Phase II Commitments, the Notifying Party has introduced a series of refinements mainly aimed at further clarifying the scope of the Commitment and at limiting the risk of circumvention or misinterpretation of the same Commitment.

The main substantial changes are:

(a) the introduction of an obligation for Google to present each EEA User with the choice to grant or deny use of any Measured Body Data by any Google services other than Google Ads;

(b) the introduction of the possibility by the Commission to extend the duration of the Ads Commitment for another 10-year period, following an assessment to be carried out during the final year of the initial 10-year period;

(c) the possibility for the Monitoring Trustee to assess the technical means through which Google generates access logs and synthesizes such logs and access information into the auditable logs that are provided for review.